

 <b>국토교통부</b>		<b>보도설명자료</b>	
		배포일시	2021. 7. 5.(월) / 총 2매
국토교통부	공정건설 추진팀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팀장 박진홍, 사무관 정태현</li> <li>• ☎ (044) 201-3518, 3541</li> </ul>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연합뉴스, 7.5.) >

◆ 권익위 “시설물업 폐지 2029년까지 유예하고 업계와 더 논의해라” 의결  
- 업계 의견수렴 절차 부족, 시설물유지관리 중요성 확대, 만능면허 논란이 있는 토건업은 보호강화 등을 판단근거로 제시

- 국토교통부(이하 국토부)는 ‘건설산업 혁신대책’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(이하 권익위)의 ‘의견표명’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국토부는 그간 시설물업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시설물협회 및 개별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왔으며,
  - 유지보수 시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‘건설산업기본법’ 상 유지보수 정의 구체화, 유지보수 공사실적 세부공종별 관리, 안전 점검 전문기관 도입 등 ‘유지보수 고도화’를 추진 중입니다.
  - 또한, 토건업은 등록요건을 강화하고, 향후 폐지 계획을 기 발표(20.9.15, 보도자료)한 바 있습니다.

□ 권익위 심의결과에 따르면,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(대업종 3개까지 허용)으로 업종전환하는 경우,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충족이 의무화되면서,

○ 상당수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는 업종전환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\*됩니다.

\* (예) 토목업(종합) : 초급기술자 4명 + 중급기술자 2명 등 총 6명, 자본금 5억  
 시설물업 : 초급기술자 4명, 자본금 2억

<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권익위 의견 >

	'23.12월	'26.12월	'29.12월
<b>건설법 시행령</b>	업종전환 및 폐지	등록기준 충족유예 (모든 업체)	등록기준 충족유예 (영세업체)
<b>권익위 의견</b>	'29년 말까지	업종전환 시 등록기준	충족 의무화

□ 국토부는 앞으로도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업종전환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청취해나가면서,

○ 권익위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정태현 사무관(☎ 044-201-354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